

# 11월 3주차

## 중국 성(省)별 통관검역 이슈 브리프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중국 성(省) 별 주요 통관거부사례 (9월 기준)]

국가별	성(省)별	품 목	거부사유	비 고
한국	산둥성	차	카페인 기준치 초과	홍차의 카페인 허용치는 최대 40mg/kg 녹차의 카페인 허용치는 최대 60mg/kg 우롱차의 카페인 허용치는 최대 50mg/kg 꽃차의 카페인 허용치는 최대 40mg/kg임 기타차의 카페인 최대 허용치는 40mg/kg
말레이시아	주해시	과자	균락총수 및 대장균 허용치	균락총수 허용치 10,000cfu/g 대장균 허용치 90MPN/100g
일본	광둥성	음료수	라벨 불합격	중국 식품 라벨 표준 준수 필요
홍콩	하문시	케익	라벨 불합격	중국 식품 라벨 표준 준수 필요
대만	복건성	스포츠 드링크	특수용 음료 L-아스파르트산 기준치 초과	허용치 0.33g/kg

# 11월 3주차

## 중국 성(省)별 통관검역 이슈 브리프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01 산동성, 카페인 기준치 초과로 차음료 제품 통관 거부 (한국산)

- 지난 9월 중국 산동성 출입국검사검역국(山东省出入境检验检疫局)은 통관 준비를 하던 한국산 차음료 제품 총 265.2kg을 적발, 반품 처리
- 중국 산동성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한국산 차음료는 GB/T 21733-2008에 의거, 카페인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됨
- 2013년 검역과정에서 폴란드산, 영국산, 독일산 음료수 제품이 규정위반물지 카페인 사용 이유로 적발되어 소각처리 된바 있음
- **시사점 및 대책** : 중국 수출 전, 중국 국가표준(GB) 내 음료 제품의 카페인, 판토텐, 타우린 등 첨가물 및 성분의 기준치 정보를 사전에 파악,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음료별 주요 첨가물 및 성분 최대 허용치

음료별 주요 첨가물 및 성분 최대 허용치	
이온음료	GB 2760-2014에 의거 - 이온음료는 카페인 함유가 금지됨
탄산음료	GB 2760-2014에 의거 - 콜라형 탄산음료의 카페인 허용치는 최대 0.15g/kg 임
에너지드링크	GB 2760-2014에 의거 - 에너지 드링크의 이노시톨 사용이 금지됨 GB 14880-2012에 의거 - 에너지 드링크의 판토텐산 사용이 금지됨 GB 2760-2014에 의거 - 에너지 드링크의 리보 플라빈 사용이 금지됨 GB 2760-2014에 의거 - 에너지 드링크의 캐라멜 사용이 금지됨
커피 음료	GB/T 30767-2014에 의거 - 커피의 카페인 최대 허용치는 200mg/kg 임
차 음료	GB/T 21733-2008에 의거 - 홍차의 카페인 허용치는 최대 40mg/kg 임 - 녹차의 카페인 허용치는 최대 60mg/kg 임 - 우롱차의 카페인 허용치는 최대 50mg/kg임 - 꽃차의 카페인 허용치는 최대 40mg/kg임 - 기타차의 카페인 최대 허용치는 40mg/kg임

# 11월 3주차

## 중국 성(省)별 통관검역 이슈 브리프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02 주해시, 균락총수 및 대장균 기준치 초과로 과자 제품 통관 거부 (말레이시아산)

- 지난 9월 중국 주해시 출입국검사검역국(珠海市出入境检验检疫局)은 통관 준비를 하던 말레이시아산 과자 제품 총 8kg을 적발, 소각 처리
- GB 17401-2003에 의거 팽화식품(튀긴 식품)의 균락총수 최대허용치는 10,000cfu/g이며, 대장균 최대허용치는 90MPN/100g인데, 중국 주해시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산 과자 제품은 상기 과자 균락총수 및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됨
- 2015년 검역과정에서 대만산 과자 제품이 균락총수 및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 이유로 적발되어 반품처리 된바 있음

### 03 광둥성, 라벨 불합격으로 음료수 제품 통관 거부 (일본산)

- 지난 9월 중국 광둥성출입국검사검역국(广东省出入境检验检疫局)은 통관 준비를 하던 일본산 음료 제품 총 50kg을 적발, 반품 처리
- GB 7718-2011에 의거하여 식품 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하며 식품 라벨은 최소 판매 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해야 함. 또한 식품 라벨은 규범화된 중문을 사용해야 하며, 중문과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음
- 포장 최대 표면 면적이 20cm<sup>2</sup> 이상인 경우 식품 라벨에는 표기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커야하며 최대 표면 면적이 10cm<sup>2</sup> 이하인 경우 식품 라벨에 식품 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 중국 광둥성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일본산 음료수 제품은 상기 라벨 규정에 불합격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됨
- 2015년 태국산 음료수 제품이 라벨 불합격 이유로 적발되어 소각처리 된바 있음

# 11월 3주차

## 중국 성(省)별 통관검역 이슈 브리프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04 하문시, 라벨 불합격으로 케익 통관 거부 (홍콩산)

- 지난 9월 중국 하문시출입국검사검역국(厦门市出入境检验检疫局)은 통관 준비를 하던 홍콩산 케익 12.6kg을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적발, 반품 처리
- GB 7718-2011에 의거하여 식품 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하며 식품 라벨은 최소 판매 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해야 함. 또한 식품 라벨은 규범화된 중문을 사용해야 하며, 중문과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음
- 포장 최대 표면 면적이 20cm<sup>2</sup> 이상인 경우 식품 라벨에는 표기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커야하며 최대 표면 면적이 10cm<sup>2</sup> 이하인 경우 식품 라벨에 식품 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 2015년 검역과정에서 캐나다산 케익 제품이 라벨 불합격 이유로 적발되어 소각처리 된바 있음

### 05 복건성, L-아스파르트산 사용범위초과로 스포츠 드링크 통관 거부 (대만산)

- 지난 9월 중국 복건성 출입국검사검역국(福建省出入境检验检疫局)은 통관 준비를 하던 대만산 스포츠 드링크 제품 총 396kg을 적발, 소각 처리
- GB 2760-2014에 의거 특수용 음료의 L-아스파르트산 최대허용치는 0.33g/kg인데, 중국 복건성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대만산 스포츠 드링크 제품은 상기의 L-아스파르트산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됨
- 2014년 검역과정에서 대만산 스포츠 드링크가 L-아스파르트산 사용범위 초과 이유로 적발되어 반품처리 된바 있음

# 중국 성(省)별 검역규정 변동사항 및 개정공고 등 모니터링

중국 전역 |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 착수

2016.11.25

- 중국은 기존에 설탕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운영해 오고 있음
- 최근 한국의 대중국 설탕 수출은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올해 8월 이후 3개월 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임

## [주요 내용]

- 중국은 **설탕**과 관련해 **쿼터제**를 운영해 오고 있었음. 쿼터제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수입항목을 분류해 일정량만 들여오므로서 자국의 농수산물이나 기타 제품을 보호하는 제도임
- 중국의 설탕 쿼터량, 쿼터제 신청조건, 세율은 하기와 같음

중국 설탕 쿼터제			
쿼터량	1,945천톤		
신청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쿼터물량의 70%는 국영무역업체 배정</li> <li>• 비축기능을 가진 중앙기업</li> <li>• 전년도 설탕 쿼터 실적에 있는 업체</li> <li>• 일 600톤 이상 설탕 제조업체</li> <li>• 자본금 1,000만 위안 이상인 업체</li> <li>• 연간 설탕 판매량 6.5억 위안 이상인 업체</li> </ul>		
세율	할당 내	할당 외	
		최혜국	일반
	15%	50%	125%

- 중국 설탕 쿼터제 적용을 받는 HS코드는 HS 1701이며, 2015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HS 1701의 수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음

대 중국 설탕 수출 추이					
년 / 월	수출		년 / 월	수출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87,874	-16.2	2016년	76,828	8.2
...1월	3,727	-48.2	...1월	2,334	-37.4
...2월	10,532	-26.3	...2월	7,103	-32.6
...3월	20,943	-13.6	...3월	14,966	-28.5
...4월	28,286	-19.6	...4월	24,188	-14.5
...5월	34,377	-17.0	...5월	31,531	-8.3
...6월	43,326	-8.3	...6월	39,526	-8.8
...7월	49,933	-12.5	...7월	48,534	-2.8
...8월	57,596	-13.3	...8월	60,164	4.5
...9월	63,220	-15.6	...9월	69,405	9.8
...10월	70,975	-16.8	...10월	76,828	8.2
...11월	79,720	-16.1			
...12월	87,874	-16.2			

# 중국 성(省)별 검역규정 변동사항 및 개정공고 등 모니터링

중국 전역 |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 착수

2016.11.25

## [주요 내용]

- 지난 11월 25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은 설탕 쿼터제 유지는 물론, 9월부터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함
-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무역장벽임
- 최근, 대중국 설탕 수출은 2015년 이후 2016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오다가, 8월 이후 4.5%, 9.8%, 8.2%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중국 수입산 설탕 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은 통상적으로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쿼터제 이외에는 설탕 부문에서는 별도의 수입 규제 및 제제가 존재하지 않았음
- 이번 세이프 가드 조치는 **한국산 설탕 수입 상승과 사드 배치로 인한 비관세장벽 강화 시점이 맞물리면서 나온 조치**로 분석됨
-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기존 쿼터제 내 일반 기업에게 적용되는 125%보다 더 높은 160%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 이는 한국의 설탕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시사점 / 대처방안]

- 중국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중국 수입 설탕시장의 97%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호주 등지에서 만든 원당에도 함께 세이프가드를 발동, 한국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설탕과 관련하여 비관세장벽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산 설탕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업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사드 마찰로 인해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품목에 대한 중국 측의 비관세조치는 계속 연이어 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중국 측의 비관세 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중국 현지 식품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정부와 관련 단체의 지원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산업피해조사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중국 및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를 국내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 중국의 조치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중국 성(省)별 검역규정 변동사항 및 개정공고 등 모니터링

중국 전역 | 중국 내 인삼 비관세장벽으로 수출 어려워져

2016.11.30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수출품인 인삼이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는 4~5년근에 대한 분류군이 일반식품으로 분류하나, 6년근 인삼은 의약품 수준의 약재,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6년근 이상은 수출이 어려운 상태임

## [주요 내용]

- 대중국 인삼 수출은 2011년 4,561만 달러를 정점으로 2013년 3,907만 달러, 2014년 3,690만달러, 지난해 3,479만 **달러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음
- 올해는 2,000만 달러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올해 1~10월까지 1,668만 달러 기록)
- 현재 중국에서는 4~5년근에 대한 분류군이 일반식품으로 분류하나, **6년근 인삼은 의약품 수준의 약재,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6년근 이상은 수출이 어려운 상태임
- 또한 최근 중국 내 경기 침체 및 반부패 정책으로 선물 시장이 축소되고 있어 이 역시 중에서 인삼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향후 중국 지린성에서 대규모로 생산된 인삼이 중국 내 유통될 예정이어서 중국 인삼 수출길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시사점 / 대처방안]

- 년 수에 따른 인삼별 수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6년근 이상 인삼류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6년근은 약재 또는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입 시 반드시 중국식품약품관리감독국(SFDA)에 수입승인 및 등록을 하여야 수입이 가능</li><li>• 6년근 인삼류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인삼공사, 농협한삼인, 풍기인삼농협, 강원인삼농협 등</li></ul>
6년근 미만 인삼류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년근 이하의 인삼류는 2012년 8월 29일부터 신자원식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됨</li><li>• 따라서 5년근 이하의 인삼류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일반 식품류 수출에 준하여 수출하면 됨</li></ul>

- 6년근 이상의 경우 보건식품 등록 등 어려운 절차가 많고 최근 중국 내 인삼 소비는 가공품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규제가 덜한 4~5년근 인삼을 이용한 백삼 절편과 분말, 인삼 엑기스 등을 공략하여 수출 판로를 확대할 것을 권장함

# 중국 성(省)별 검역규정 변동사항 및 개정공고 등 모니터링

중국 전역 | 중국 내 인삼 비관세장벽으로 수출 어려워져

2016.11.30

## [시사점 / 대처방안]

- 중국에서 6년근 이상의 인삼은 보건식품 등록이 필요함
- 중국의 보건식품 등록 절차는 하기와 같음

